Sh매일받는통장 상품설명서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 ◈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88-1515/1644-1515)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suhyup-bank.com)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의사항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품 개요 및 특징

■ 상 품 명: Sh매일받는통장

■ 상품특징: 여유자금을 단기간 예치하여도 매일의 잔액에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또는 증서), 예금상품계약서,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따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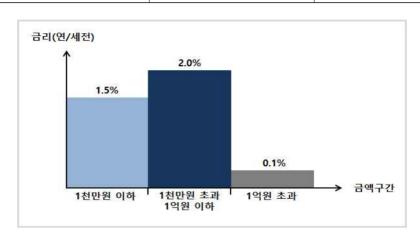
	구	분		내용	
가	입	대	상	실명의 개인 (1인 1계좌)	
가	입	금	액	제한없 음	
상	품	유	형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계정과목 : 저축예금)	
거	래	방	田田	• 신규 : 비대면(스마트폰뱅킹) • 해지 : 영업점, 비대면(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 기존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부터 전환 가입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비대면 전용 상품으로 신규 시 통장이 교부되지 않습니다. ※ 본 상품은 사업용 계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계	약 해	지 방	법	 영업점 방문 해지 성년인 개인은 비대면 채널을 통한 해지 가능 ※ 비대면채널을 통한 해지 시 해지 잔액을 입금할 수 있는 본인명의 입출금이 자유로운예금 계좌가 필요합니다. 	

• 이 예금의 금리는 신규일 당시 모바일앱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금리가 적용되며, 금리가 변경될 경우 변경일 이전에 가입한 계좌도 변경일부터 변경된 금리를 적용합니다.

(단위: 세금공제 전 기준 연%)

	금액구간	기본금리	비고
I	1천만원이하	1.5%	
I	1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2.0%	매일 최종 잔액에 대하여 구간별 금리가 차등 적용됩니다.
Ш	1억원초과	0.1%	

기 본 금 리 (2023.04.27 기준)



<예시> 통장 잔액이 1억 2천만원인 경우, 1천만원에 연 1.5%, 9천만원에 연 2.0%, 2천만원에 연 0.1%가 적용됩니다.

• 이 예금은 아래 각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금액 구간 I, II에 한해 항목별**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최대한도는 연 1.0%p입니다.

(단위: 세금공제 전 기준, 연%p)

금 대 리 (2023.04.27 기준)

항 목	우대금리	확정시기	적용기준
마케팅 동의	0.1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상품서비스 안내 등) 내 상품서비스 안내수단 전체 동의 한 경우
입출금통장 첫거래고객	1119	│ 人 │ / 人│	이 예금 신규일 기준 수협은행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 가입 이력이 없는 고객 <u>(단, 상품 가입일부터 6개월동안 제공)^{주1)}</u>

주1) <예시> 가입일이 23.4.27인 경우, 23.4.27 ~ 23.10.26 기간동안 우대금리 적용

이자 계산방법 (산 출 근 거)

• 이자지급시기가 원가일^{주1)} 또는 해지일인 경우 이자계산

- 원가일 : 매일의 최종 잔액에 대하여 구간별 차등 금리를 적용하여 이자계산 기준일(매월 제3토요일. 단, 법정공휴일^{주2)}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이자를 계산하여 원가일에 세후 이자 지급

- 해지일 : 매일의 최종 잔액에 대하여 구간별 차등 금리를 적용하여 해지일 전일까지의 이자를 계산하여 해지일에 세후 이자 지급

• 이자지급시기가「오늘 이자받기」^{주3)} 신청일인 경우 이자계산

- 매일의 최종 잔액에 대하여 구간별 차등 금리를 적용하여「오늘 이자받기」

	신청 전일까지의 이자를 계산하여 신청일에 세후 이자 지급	
	• 이자계산기간 1. 원가일 및 해지일의 이자계산기간 - 원가일: 입금일 또는 지난 이자지급일부터 이자계산기준일까지 - 해지일: 입금일 또는 지난 이자지급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	
	2. 「오늘 이자받기」 - 입금일 또는 지난 이자지급일부터 「오늘 이자받기」신청 전일까지 * 이자지급일 이후에는 이자지급일 전일자로 기산일 거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자 지 급 시 기	 원가일: 매월 제3토요일(법정공휴일인 경우 직전영업일)의 다음날 「오늘 이자받기」: 고객 신청일 해지일: 계좌 해지시 *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이자를 원금에 더하지 않고, 계좌 해지 또는 추가 입출금 거래 발생일에 일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우 대 서 비 스	• 이 통장을 통한 거래는 다음의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전자금융(스마트폰뱅킹,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당·타행 이체 수수료 (상담원을 통한 이체 포함) - 타행 자동이체, 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	
연계·제휴서비스	• 없음	
양도 및 담보제공	• 양도 : 불가 • 담보제공 : 불가	
예 금 자 보 호 여 부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세 제 혜 택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불가	
원 금 및 이 자 지 급 제 한	 계좌에 압류^{주4}, 가압류^{주5)}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 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거 래 중 지	•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입출금, 잔액조회, 이관 등의 거래 제한	

	(1) 예금잔액이 10,000원미만이며, 1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2) 예금잔액이 10,000원이상 50,000원미만이며, 2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3) 예금잔액이 50,000원이상 100,000원미만이며, 3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 편입시기 : 연 2회(매년 6월, 12월 제3 토요일 기준으로 익일인 일요일에 편입) • 거래를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행 영업점에서 본인확인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한 후 거래 가능
휴 면 예 금 및 출 연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주6)}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 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위 법 계 약 해 지 권	• 판매사가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금융소비자가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 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및 위약금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자 료 열 람 요 구 권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3 유의 사항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동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제3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비대면 계좌개설은 통장이 교부되지 않으며, 통장발급 요청 시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 이 상품의 예금 지급은 입금 순서가 빠른 것부터 먼저 지급되는(선입선출) 방식입니다.
- 이 상품설명서 내용은 작성 시점 기준이며, 향후 금융시장 등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설명서는 관계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 이 상품은 Sh수협은행 개인금융부(1588-1515)에서 개발 및 관리하는 상품입니다.
- 영업점 등을 통해 은행에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영업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한 연장 시 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진행상황을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 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 (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록〉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어	설명
주1) 원가일	■ 이자를 지급하여 통장에 입금하는 날, 이자계산기준일의 다음날
주2) 법정공휴일	■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날
주3) 오늘 이자받기	■ 고객이 직접「오늘 이자받기」신청 시 바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주4) 압류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주5) 가압류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 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주6) 출연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 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